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12.27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-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함)에서 운영하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(이하 "학점인정과정"이라함)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.
- 제2조 (지원자격)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. 단, 대학(전문대학, 개방대학, 각종학교 포함)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.
 -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.
 - 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.
- 제3조 (모집인원) 모집인원은 관할 행정 부서에 신고된 교육원의 모집인원으로 한다.
- 제4조 (지원절차)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 - 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(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 인정증명서)
 - 3. 기타(전적대가 있는 학생은 관련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등)
- 제5조 (전형방법)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- 제6조 (등록) 학점인정과정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한다.
- 제7조 (수업) 학점인정과정의 등록생은 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한다.
- 제8조 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- 제9조 (정기휴업) 정기 휴업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. 단, 휴업 일에 수업이 있을시 반드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수업을 진행한다.
- 제10조 (장학금) 장학금규정은 평생교육원 장학금 규정 및 총장 승인사항에 준한다. <개정 2019.12.27>
- 제11조 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. 제12조 (이수단위) 교과목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 - 2. 수업시간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, 교과목 특성상 이를 달리 할 수도 있다.
- 제13조 (학점신청) 학점인정과정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
 - 1. 학점인정과정은 1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- 2.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진행자는 105학점, 전문학 사학위 진행자는 60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
- 제14조 (시험)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, 과정에 따라 이론시험, 실기시험, 과제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정일: 2018.6.15. - 1 - 개정일: 2019.12.27

제15조 (학업성적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, 출석성적, 과제물 및 평소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. 단, 실험. 실습에 관한 과목은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
제16조 (성적평가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, 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등 급	점 수	평 점		
A+	95~100	4.5		
A0	90~ 94	4.0		
B+	85~ 89	3.5		
В0	80~ 84	3.0		
C+	75~ 79	2.5		
C0	70~ 74	2.0		
D+	65~ 69	1.5		
D0	60~ 64	1.0		
F	0~ 59	0		

제17조 (학점인정)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.

- 1.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
- 2.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10분의 6 이상일 것
- 3. 대학교 또는 (전문)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것

제18조 (학점취소)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학점인정 과정 이수 후 부적격자로 밝혀졌을 때
- 2.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

제19조 (학사학위이수학점)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- 1. 총 인정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
- 2.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
- 3.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
- 4.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

제20조 (전문학사학위이수학점)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- 1. 총 인정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것
- 2.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
- 3.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
- 4.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

제21조(학위수여요건)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수 있다.

- 1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
- 2. 교육원에 등록(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)하여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
- 3.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60학점, 교양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- 제22조 (전문학사학위수여요건) 전문학사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 - 1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
 - 2. 교육원에 등록(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)하여 취득한 학점이 45학점 이상인자
 - 3.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5학점, 교양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- 제23조 (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)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사학위 신청동의서(별지서식 2호)를 교육원에 제출한다.
 - 2.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.
- 제24조 (전문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)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전문학사학위 신청동의서(별지서식 2호)를 교육원에 제출한다.
 - 2.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.
- 제26조 (학위종별)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,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.
- 제27조 (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) 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학위증(별지서식 1호), 학위증명서는 교육원에서 발급한다.
 - 2.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.
 - 3.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.
- 제28조 (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) 전문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학위증(별지서식 3호), 학위증명서, 학위수여예정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발급한다.
 - 2.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.
 - 3.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.
- 제29조 (보칙)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"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사운영 등에 관한 지침"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6월15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9년12월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
별지 서식 1호[학사학위증]

제 2XXXXXX호

학 위 증

성 명: 000

00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
전공: 전공(사)

2000년 00월 00일

한국항공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

학위등록번호 : 항공대-학점-20XX-XXX

별지 서식 2호

학 위 신 청 동 의 서										
인적사항	성 명			학번 생년	호 이 일 일					
	학 위	□ 학사 □학사(타전공				전 공				
	교육부장관 명의			대학의 장 명의						
학위종류										
						Ŀ L	<u> </u> 월	일		
신 청 인 : (인								(인)		
교육훈련기관 :										
			Ę	담 당 %	자 :			(인)		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										

별지 서식 3호[전문학사 학위증]

제 2XXXXXX 호

학 위 증

성 명:

생년월일:

전 공: ()

위 사람은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라()의 학위를 수여합니다.

교육부장관 (직인)

학위등록번호: